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자체평가 관련 사항 안내

1.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과 관련됩니다.
2. 우리부는 국내 축산물의 위생 관리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의 위생관리 제고 및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체평가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관내 도축장·집유장이 아래 기준에 맞춰 HACCP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4.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시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검토 후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평가주기: 연 1회 이상
- 나. 평가주체: 각 도축장, 집유장 HACCP 책임자
- 다. 평가대상: 관내 도축장, 집유장 전체
- 다. 평가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사후관리용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 실시상황평가표 활용
- 라. 결과보고: 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마. 행정사항: 각 시·도는 관내 축산물 작업장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 후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사항 점검과 현장 지도 실시. 끝.

- 붙임 1. 도축업 HACCP 자체평가표 1부.
2. 집유업 HACCP 자체평가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단법인)한국유가공협회

주무관 **최준민** 사무관 **이병용** 대결 2021. 6. 22.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전결**

협조자

시행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 6. 22.) 접수
3105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977 팩스번호 044-863-9219 / goodwill@korea.kr / 비공개(7)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